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592 발의연월일: 2020. 10. 21.

발 의 자:한병도・이수진・이해식

김승원 · 정일영 · 이용빈

박상혁 • 서영교 • 이형석

이상헌 의원(10인)

제안이유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일반민간매입임대주택 유형을 폐지하고, 민간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을 종전 8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소득세 세액 계산 등에 있어 동 개정사항을 반영하기위하여 「소득세법」에 준하여 「지방세법」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등록임대주택 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시 적용되는 필요경비 우대 등에 대한 제도 합리화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 정법률」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자발적 신청을 통하여 등록이 말소되 는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미충족하더라도 필요경비 우대 또는 감 면된 세액을 추정하지 아니하고, 신규로 등록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미충족 시 필요경비 우대 또는 감면된 세액을 추정하는 의무임대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함(안 제93조제1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부가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률안 제6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 및 관련 부칙이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8년"을 "10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4년"을 "10년"으로 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93 조제1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8일 이후 등록이 말소되 는 분부터 적용한다.
 - ② 제93조제12항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8일 이후 등록을 신청하는 민간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 제3조(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20 년 8월 18일 전에 등록을 신청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제93조

제1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3조(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제93조(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① ~ ⑪ (생 략)	① ~ ⑪ (현행과 같음)
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12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개인	
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0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	1
라 세액을 감면받은 사업자가	
해당 임대주택을 4년(「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	
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	
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u>8년</u>) 이	<u>10년</u>
상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0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2. 제11항 단서를 적용하여 세	2
액을 계산한 사업자가 해당	
임대주택을 <u>4년</u> 이상 임대하	<u>10년</u>
지 아니하는 경우: 제11항 단	
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	
한 세액과 당초 신고한 세액	
과의 차액	
③ ∼ ⑸ (생 략)	⅓ ∼ ⅓ (현행과 같음)